

“중국 사업환경 변화, 이렇게 대응하라”

-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08. 6. 4(수) 13:30~18:00
- 장 소 : 삼성동 COEX 전시장 3층 장보고홀
- 주 최 : KOTRA

● 프로그램 소개

시 간	주 제	연 사
13:30~13:40	인 사 말	
13:40~15:10	중국의 최근 세무환경변화와 대응전략 - 新기업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상해 프라이스워터쿠퍼스 (PwC) 대표회계사/삼일회계법인 나상원 상무
15:10~15:20	coffee break	
15:20~16:50	중국의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 新노동계약법 실시조례를 중심으로	KOTRA 중국팀 이평복 팀장 (前 다롄무역관장)
16:50~17:00	휴 식	
17:00~18:00	<사례발표>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브랜드 마케팅 성공사례 (※ 중국 아동복 브랜드 10대 회사이며 현재 중국 전역에 280개 매장 보유)	펑터라이 송영민 사장

목 차

● 중국 세무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3

나상원 PwC 대표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무)

● 중국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47

이평복 KOTRA 중국팀장

중국 세무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나 상 원

PwC 대표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무)

중국 세무환경 변화에 따른 자회사의 준비

June, 2008



PwC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3	수행과제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 신기업소득세법
- 이전가격 관련 통합규정
- 세무조사의 강화
- APA의 활성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3

수행과제

신기업소득세법 - 기본세율 변경

(구)기업소득세법

- 일반 비생산성 기업
→ 30% + 3%
- 연해 경제개발구 기업등
→ 24% + 3%
-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기업, 쌍밀기업, 고신기술기업등
→ 15% + 3%



신기업소득세법

- 25% 기본세율이 적용됨(지방세 없음)
- 15% 세율은 신기업소득세법상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함. 다만, 소규모 저이윤 기업은 20%의 세율이 적용됨

해설

- 기업소득세에 부가 징수되었던 지방세(3%)가 폐지됨
- 고신기술기업은 더 이상 고신기술원구에 소재할 필요가 없음, 지역제한 없이 신기업소득세법상 고신기술기업에 해당하면 세제혜택이 가능해짐
- 소규모 저이윤기업
공업기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표준이 3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3,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기업소득세법 – 기본세율 변경, 경과 규정

(구)기업소득세법

- N/A



신기업소득세법

- 기본세율이 24%이거나 30%인 기업의 경우 2008년부터 즉시 25%를 적용함
- 기본세율이 15%인 기업(고기술기업으로 15% 적용 받는 기업은 제외)의 경우에는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25%에 도달하도록 함
(예) 2007년에 기본세율 15%인 경우
2008년 – 18%
2009년 – 20%
2010년 – 22%
2011년 – 24%
2012년 – 25%
- 경과규정은, 2007년 3월 16일 이전에 공상등기등록을 완료한 외상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됨
-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은 실시세칙에서 언급되지 않고 보충규정에서 언급됨(국발 [2007] 39호)

신기업소득세법 - 새로운 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구)기업소득세법

- 고신기술원구에 소재해야 함
- 중국 고신기술제품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 핵심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없음
-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원 요건 10% 이상
- 고신기술관련 제품의 연구개발비가 당해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요건 5% 이상 등 기타요건



신기업소득세법

- 고신기술원구에 소재할 필요가 없음
- 고신기술의 범위 및 소유권 유무
- 정량적 요건 등의 충족
- 고신기술 기업자격의 재평가절차를 거쳐야 함

해설

- 고신기술기업 관련 세수혜택
 -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됨
 - 5대 경제특구(SEZ: 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와 푸둥신구에 새로이 설립되는 고신기술기업은 2면3감등의 정기세수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신기업소득세법 – 새로운 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계속

해설

- 고신기술기업 관련 자격 기준
 -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고신기술관련 핵심지적재산권을 소유
 -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원이 전체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상
 - 고신기술관련 제품의 연구개발비가 당해연도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상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과학기술인원이 전체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상
 - 고신기술제품 관련 매출액과 기술성수입의 합계액이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상
 - 고신기술기업 인증관리방법에 규정된 기타 조건
- 고신기술 기업자격의 재평가 절차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영역 및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이 제정 중에(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 있으며 기존의 고신기술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평가절차를 거쳐야 함
- 고신기술관련 핵심지적재산권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중국 내 법인이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핵심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관련 규정의 Monitoring 이 필요함

신기업소득세법 – 특별납세조정 규정 도입

(구)기업소득세법

- 규정 없음



신기업소득세법

- 특별납세조정 항목으로 기존의 이전가격조정(TP) 이외에 다음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
 - 일반조세회피방지 규정(GAAR)
 - 국외지주회사 규정(CFC)
 - 과소자본세제(Thin Cap)
 - 공동원가분담 규정(CSA)
- 거래의 실질을 강조함

해설

- 일반조세회피방지 규정(GAAR: 부당행위계산부인)
 -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목적 없이 처리하고 그 과세대상 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 '합리적인 상업목적 없이'란 '주요 거래목적이 세금감소, 면제, 지연납부 등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이 전제조건이 됨

신기업소득세법 - 이전가격 조정등에 대한 가산세 도입

(구)기업소득세법

- 개념적으로 이전가격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벌금(가산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가산세의 개념으로 벌금이 부과됨. 사안의 경중 및 탈세여부에 따라 소재지 세무기관이 부과함
- 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조세징수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부과지일 기준으로 채납일로부터 1일당 채납세액의 0.05%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함



신기업소득세법

- 다음의 특별납세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산세 개념이 신기업소득세법에 도입됨. 최장 10년간 소급조정 가능하며, 2008년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소급조정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 됨
 - 이전가격 조정(TP)
 - 일반조세회피방지 규정(GAAR)
 - 국외지주회사 규정(CFC)
 - 과소자본세제(Thin Cap)
 - 공동원가분담 규정(CSA)
- 가산세율 = 인민폐대출기준이자율 + 5%
- 이전가격 조정(TP)의 경우, 이전가격 신고 목적으로 과세관청에 정기적으로 이전가격 신고서류를 적절히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민폐대출이자율로 가산세율이 경감될 수 있음
- 가산세는 세무목적상 공제 불가능함

신기업소득세법 – 배당 원천징수면제 폐지됨

(구)기업소득세법

-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원천징수를 면제함



신기업소득세법

국무원이 비준한 소득(추후 관련 보충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대해서만 관련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기타 배당의 경우에는
1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다만, Pre-
2008년 이전 이익을 2008년 이후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원천징수가 면제됨(재세 [2008]
1호)

- 원천징수되는 기타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경감액이 없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됨
- 한·중 조세조약에 의하면, 25% 이상 중국내
거주자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대한민국 투자자가
중국경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해설

- 원천징수 면제와 관련하여, 추후 발표될 국무원이 비준한 소득에 대해 지속적인 Monitoring 필요함

신기업소득세법 - 신규 비용공제 한도액 등

(구)기업소득세법

- 접대비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입의 일정률을 한도로 함
-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 지출액에 대한 한도규정 없음
- 중국 경내 공익 또는 구제성질 외의 기부나 증여는 비용 불인정
- 직원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한도규정 없음(내자기업의 경우 급여총액의 1.5%~2.5%를 한도로 공제함)



신기업소득세법

- 접대비는 실제 지출액의 60%(매출액 또는 영업수입의 0.5%를 한도로 함)까지만 공제 가능
- 광고비 지출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5%까지만 공제 가능. 초과분은 이월공제가 가능함. 다만,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분이 별도로 정한 광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음
- 공익성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12% 이내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다만, 생산 경영활동과 무관한 비광고 성격의 찬조비용은 세무상 공제 불가능
- 직원 교육비는 급여 총액의 2.5%를 한도로 공제되며 초과분은 향후 납세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함. 다만, 국무원 재정·세무 부분이 정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음

해설

- 규정변화 따른 세금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내부 process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 신기업소득세법
- 이전가격 관련 통합규정
- 세무조사의 강화
- APA의 활성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3

수행과제

이전가격 관련 규정의 통합

특별납세 조정 관리 규정(초안)의 개요

- 전체 13개 조항 총 120조로 구성됨, '관리방법'(별도의 독립적인 규정)의 형태
- 신기업소득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에 근거함을 명시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기존의 개별 이전가격 규정의 통합 재정비가 목적임
 - OECD Guideline 및 한국의 국조법과 유사한 형태의 이전가격 통합규정
- 제반 양식들도 동시에 발표하여 이전가격 행정의 통일성 및 체계성 추구
 - 과거 지역별로 이전가격 실무 등에 있어 차이가 나던 현상에 대한 개선의지 반영
- 현재 국가세무총국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외부에 Sounding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6/7월 정도에 정식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초안에 대해 많은 외투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관련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 보고서를 매년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까지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음

이전가격 관련 규정의 통합

주요 내용 요약

Chapter	제목	주요 내용
1	총칙	• 신기업소득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에 근거함을 명시
2	관련기업의 범위	• 지분율 기준이 25%에서 20%로 변경(관련기업 범위의 확대) • 정기기업소득세 신고시 신고양식 규정(제9조)
3	이전가격 문서화 관리	•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내용(관련거래 규모 등에 따른 구분)
4	이전가격 방법	• CUP, RP, CP, TNMM, PS 등을 모두 언급(우선순위 부여하지 않음) • Berry ratio가 TNMM의 PLI로서 공식 명시됨
5	이전가격 조사 및 조정	• 원칙적으로 같은 세율의 내국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조정을 하지 않음 • 이전가격 조정시 이익율이 중위수 이하일 경우 중위수 기준으로 조정 • 5년간 사후관리
6	APA (사전가격합의)	• APA 신청 자격에 대한 기술 • Bilateral APA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명시(기존은 Uni만 규정)
7	CSA (원가분담약정)	• 무형자산의 개발 외에 서비스 원가 분담에 대해서도 명시
8	특정외국기업 관리	• 조세피난처 기업과 관련된 내용
9	과소자본세제	• 기존 부채비율에 대한 내용은 없음
10	조세회피방지 일반규정	• 실질과세원칙 명시 • 이전가격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내역 조사
11	상호조정	• 상호합의 관련 절차
12	벌과금	• 별도 요약
13	부칙	• 2008.1.1부터 적용

PRICEWATERHOUSECOOPERS
普 华 永 道

이전가격 관련 규정의 통합

이전가격 보고서의 준비 의무

-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관련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CDR(이전가격 보고서)를 매년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전까지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15일 내에 제출함
- 관련기업 거래금액 2천만위안 ~ 1억위안의 경우 간소화된 보고서 준비
- 관련기업 거래금액 2천만위안 이하, APA체결한 기업, 중국내 거래만 있는 경우는 CDR 준비의무 면제
- CDR 제출 시 회사의 날인과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함
- CDR은 중국어로 준비되어야 함
- CDR 안에 사용된 모든 정보는 원천이 기재되어야 함
- 기업은 과거 10년치 CDR을 보존하고 있어야 함
- 원가분담약정과 과소자본세제와 관련된 기업도 별도로 CDR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

이전가격 관련 규정의 통합

정기소득세 신고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시 기재 사항

정기기업소득세 신고시 신고내용	이전가격 문서화 보고서	이전가격 문서화 보고서(간소화)
1.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관계에 대한 양식 2.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거래에 대한 요약 양식 3.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유형자산 매매 거래 양식 4.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서비스 거래 양식 5.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금융 거래 양식 6.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자산의 이전 양식 7.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과소자본세제 양식 8.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해외 지불 거래 양식 9. 해외투자 내역 양식 10. 특정외국기업 관련 내역 양식	1. 조직구조 본사 및 관련 기업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 및 적용 세율 등 2.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회사에 대한 개요 및 경영전략, 산업 및 시장분석, 기능 및 위험분석, 재무분석 등 3. 관련기업간 거래상황 해외 및 국내 거래, 무형자산 거래 포함 4. 비교가능성 분석 분석시 각종 고려요소 및 사유등 5. 이전가격 방법의 선택 및 사용 선택의 사유 및 다른 방법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등	1. 기업의 조직구조 2.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 시장정보, 관련 기업간 이익배분 3. 기업의 기능 및 위험 분석 4. 주요 관련 거래의 기술 5. 적용된 이전가격 방법과 이익을 지표 6. 독립거래가격 혹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이전가격 관련 규정의 통합

관련 벌과금 규정

-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이전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 조세징수관리법 제62조: 2천위안 이하 벌금, 중요할 경우 2천위안 ~ 1만위안 이하 벌금
- 부실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서제공을 거절한 경우
 - 조세징수관리법 제70조: 1만위안 이하 벌금, 중요할 경우 1만위안 ~ 5만위안 이하 벌금
 - 과세당국이 기업소득세법 제44조에 의해 당해 기업의 과세표준을 임의로 산정함
- 납세자가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거래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과소납부액에 대해 기업소득세법 제48조에 의해 특별이자 징수(2008년 이후 거래)

이전가격 관련 규정의 통합

특별 납세 조정 관리규정(초안) 관련 시사점

-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규정에 대비한 이전가격 보고서 준비 체계 구축 필요
 - 보고서 양식 및 내용 등의 일관성 유지
 - 해외자료 입수 프로세스 수립
- 기존 이전가격 거래 형태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간소화 규정이나 면제 규정 대상의 파악
 - 원가분담약정 등의 활용가능성 타진
- 과소자본세제의 해당가능성 검토
- APA 대상 법인의 점진적 확대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 신기업소득세법
- 이전가격 관련 통합규정
- 세무조사의 강화
- APA의 활성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3

수행과제

이전가격 세무조사 사례

최근의 조사 경향

- 통상 1년 이상, 기본적으로 3년 이내, 5년까지 연장 가능
- 최장 과거 10년까지 소급조정 가능
- 비공개 정보(Secret comparable)의 사용도 가능(APA의 경우 공개 정보만 활용)
- 중국 내 관련기업간 거래도 조사 대상
- 산업/그룹 중심의 조사 실시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 강화
- 국가세무총국에 의한 종합적인 관리
- 기본적으로 서면조사 중심, 법인세 조사 후 이전가격 조사로 확대 사례 빈번
- 로열티(기술사용료), 서비스 비용 지급거래 등에 대한 관심 증가
- 다양한 이전가격 방법에 대한 관심 증가 : 이익분할법 등



조사대상의 주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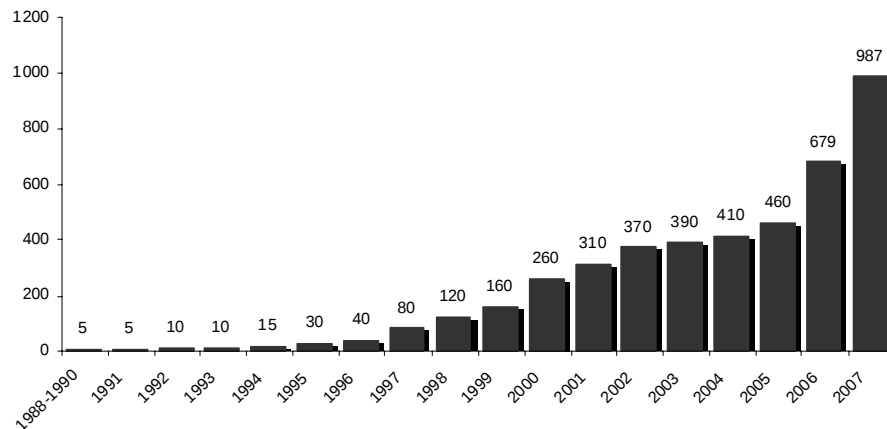
- 세제혜택 기간(2면3감) 이후 급격한 이익률 하락
- 거래규모에 비해 지속적인 낮은 이익률 (최근 천진 지역의 경우 영업이익률 3% 이하인 회사가 잠재적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됨)
- 이익 수준의 지나친 Fluctuation
-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로열티 등 무형자산 거래
- 관련회사가 조사를 받은 경우

이전가격 세무조사 추정액 추이

세무조사 추정액 추이

- 2006년 이후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의한 조정금액 급격히 증가
- 거액의 조정 규모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최대 5억 RMB 사례까지 있었음)

이전가격 조사에 의한 조정 후 세수입 추이 (단위: 백만 RMB, 국가세무총국)



PRICEWATERHOUSECOOPERS
普 华 永 道

이전가격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최근 입장

단순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 국가세무총국은 Guoshuihan [2007] 236호를 발표하면서, 해외에 있는 본사의 전반적인 경영계획과 제품 주문에 기반하여 단순 생산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시장개척 및 판매기능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비효율적인 정책, 생산능력의 비활용 및 제품의 시장 수요저하 등의 원인에 의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기존의 실질적인 역할이 내료가공(무상사급) 또는 진료가공(유상사급) 형태였던 생산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이익률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 및 본사의 상황등에 의해 이익률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단순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는 가능한 안정적인 이익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정책을 운용해야 하고, 부득이 하게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예, 생산초기 단계 등) 이에 대한 충분한 문서화와 근거 확보가 필요함

PRICEWATERHOUSECOOPERS
普 华 永 道

이전가격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최근 입장, 계속

이전가격
기능·재무분석
강화

- 국가세무총국은 Guoshuihan [2007] 363호를 발표하면서, 이전가격 조사시 피감사기업과 지방세무국이 국가세무총국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진하고 있음
 - 이전가격 피조사기업 작성 : 기업의 기능분석표
 - 지방세무국 작성 : 기업의 기능분석 요약표, 관련 기업간 거래에 대한 재무분석표
- 이는 이전가격 감사시 관련 기업간 거래에 대해 수행하는 기능과 재무 분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과세관청이 동종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음
- 2007년 8월 이후 베이징 및 천진지역 상당수 회사가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았음
- 이전가격 문서화를 준비하면서, 국가세무총국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함께 작성,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전가격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최근 입장, 계속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관심증대

- 최근 양주에서 2주간 이전가격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모여 무형자산 거래에 대해서만 훈련하였음
- 로열티 거래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입장은, 만약 어떤 기업이 계속 낮은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즉,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의미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면 비용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는 견해임
- 중국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 거래 형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이전가격 조사의 주요 초점은 무형자산 거래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로열티 및 서비스 관련 거래 계약 내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검토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무형자산 거래 구조의 변경 여부를 고려해야 함

PRICEWATERHOUSECOOPERS
普 华 永 道

이전가격 세무조사 실제 사례

한국기업 실제 조사 사례

CASE 1	- 세제혜택 기간(2면3감) 중에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u>감면 기간 이후 급격한 이익률의 하락</u>으로 심지어 손실 기록 - 이전가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
CASE 2	- 거래 규모는 상당하나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익률(1%~2%) 기록 - 회사는 고신기술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며, <u>내수(비관련거래)와 수출(관련 거래) 부분의 이익률 수준이 다름</u> - 세무당국은 고신기술기업의 이익률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입장이며, 이전가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
CASE 3	03년도에 손실을 기록했다가, 시장상황 호전 및 본사와의 이전가격 조정 등으로 04년도에는 이익을 기록했으나, 05년도에는 다시 이전가격 조정으로 손실 기록 - 세무당국은 <u>04년도에 이익을 기록한 것이 정상</u>이라고 보고, 03년도와 05년도의 손실분을 조정하고자 함
CASE 4	<u>규모에 비해 낮은 이익률 수준에 대해 세무당국의 이슈제기</u> - 회사가 자체적으로 과거 10년치분에 대한 이익률을 상향 조정하여 납부하였음

이전가격 세무조사 실제 사례, 계속

한국기업 실제 조사 사례, 계속

CASE 5	▪ 단순 위탁가공(유상사급)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u>시장개척 및 신제품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u>하고 있다는 것을 세무당국에 인정. 이외에 별도의 판매수수료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급 ▪ 세무당국은 회사가 상당한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하고, 이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했으므로 단순한 유상사급 회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전체적인 Value Chain 관점에서의 분석
CASE 6	▪ 3분기 기업소득세 분기 신고시까지 이익이 나서 세금을 예납했으나, 4분기 관련기업과의 거래 등으로 인해 손실이 나서 <u>연도말 신고시 기업소득세를 환급</u> 받아야 하는 경우 ▪ 세무서는 환급사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세무조사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음
CASE 7	▪ <u>중국 내 판매법인과의 거래</u>에 대해 생산법인의 낮은 이익률 수준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이슈 제기함 ▪ 세무당국에서 먼저 국내 APA 를 제안하여, 현재 APA 진행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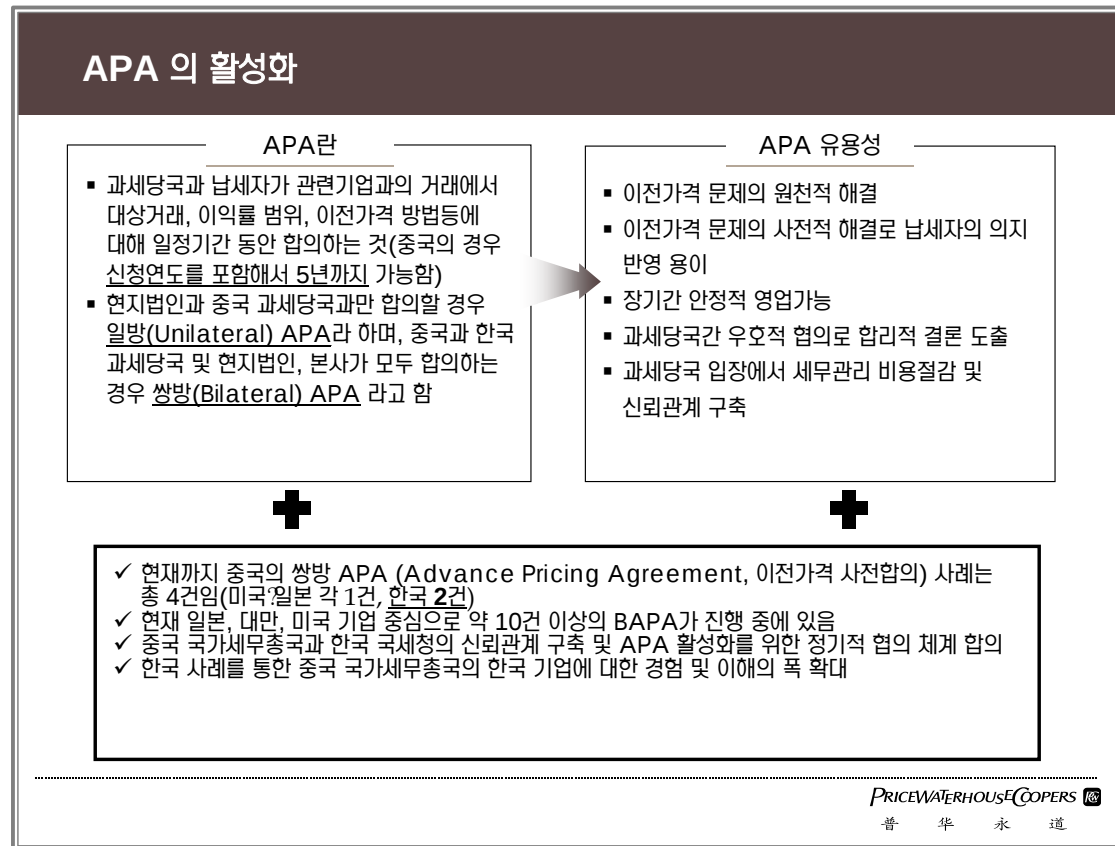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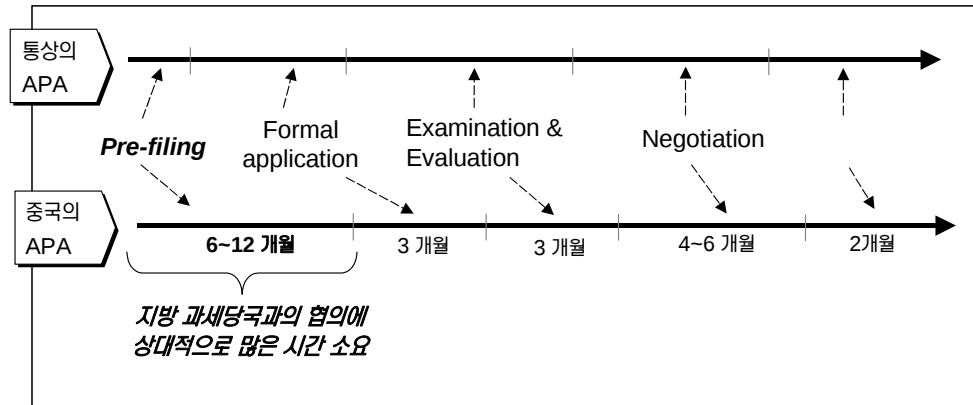
- 신기업소득세법
- 이전가격 관련 통합규정
- 세무조사의 강화
- APA의 활성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3 수행과제



APA 의 활성화, 계속



지방 과세당국과의 협의

- 사전협의단계(Pre-filing stage)에서 지방 과세당국과의 Communication 이 매우 중요함
- 과세당국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시-성-중앙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APA 신청은 시단위 세무국에 제출하므로 지방 과세당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

APA 의 활성화, 계속

APA 관련 규정의 발전

- 신기업소득세법에서 APA 관련 규정의 도입으로 APA 제도를 공식적으로 장려함
- 기존 APA관련 규정을 이전가격 통합 규정상에서 구체적으로 재정의
 - APA 관련 제반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APA의 신청을 제도적으로 지원
 - 기존 규정의 경우 Unilateral APA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었으나, 통합 규정은 Bilateral APA의 내용도 함께 규정

한중 APA 사례를 통한 경험

- 지방과세당국 및 중앙(SAT)와의 동시 Communication 중요
 - 지방 수준에서 정제될 경우 APA 진행의 촉진에 유효하나 신중하게 접근 필요
- 한국 국세청의 시기적절한 참여 필요
 - 지난 APA사례를 계기로 한국 국세청과 SAT간 APA 관련 정기 채널 마련되어 있음
 - 한국 국세청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APA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본사, 자회사 및 지원 컨설팅 법인간 내부 Communication 중요
 - 관련 자료의 준비 및 대응전략의 준비에 있어 상시적인 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세율변경 영향 ▪ 고신기술인증제도 사전 검토 ▪ Tax Filing ▪ 이전가격보고서 준비
3	수행과제

세율 변경으로 인한 영향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변화 추이

구분	07현황	08 고신기술 재인증여부	기본 세율	적용세율 (%)					
				'07	'08	'09	'10	'11	'12
판매법인	-	-	30%	33	25	25	25	25	25
생산법인	경제특구		15%	15	18	20	22	24	25
	경제기술개발구		15%	15	18	20	22	24	25
	쌍밀		15%	15	18	20	22	24	25
	연해경제개발구		24%	24	25	25	25	25	25
	기타지역소재 고신기술원구	○	15%	15	15	15	15	15	15
		×	15%	15	25	25	25	25	25

- 판매법인의 경우 33%의 세율이 08년부터 25%로 적용됨
- 생산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15%에서 25%로 인상되나, 기타지역 소재 고신기술 원구의 고신기술기업인 경우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08년부터 바로 25%세율이 적용됨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세율변경 영향 ■ 고신기술인증제도 사전 검토 ■ Tax Filing ■ 이전가격보고서 준비
3	수행과제

고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

고신기술기업 자격 부합 여부 사전적 검토

신기업소득세법	구체적 기준	해당 여부
핵심지적재산권 요건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술 보유	?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 영역 요건	8개 영역	?
종업원 요건	전문대학(2,3년제 대학) 이상 과학기술 인원이 기업전체 직공수의 30% 이상	?
연구개발인원 요건	기업전체 직공수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요건	최근 3개 회계연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최근 1년 매출액 5,000만원 미만: 6% 이상 - 최근 1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20,000만원 미만: 4% 이상 - 최근 1년 매출액 20,000만원 이상: 3% 이상 - 경내 발생액이 60% 이상	?
고신기술제품 수입금액 비율 요건	기업전체 매출액의 60% 이상	?

‘연구개발조직관리수준’, ‘과학기술성숙도전환능력’, ‘자체지식산업권수량’, ‘매출 및 총자산 성장성 등 지표’는 별도 제정되는 <고신기술기업자격인증의 관리업무지침> 조건에 부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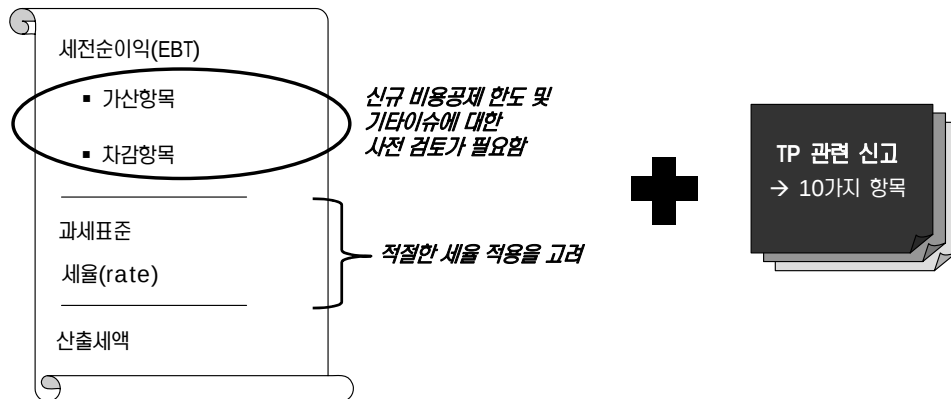
PRICEWATERHOUSECOOPERS
普 华 永 道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세율변경 영향 ▪ 고신기술인증제도 사전 검토 ▪ Tax Filing ▪ 이전가격보고서 준비
3	수행과제

Tax filing에 미치는 영향

연도말 세무조정 신고



→ 정기 연도말 세무조정이 신기업소득세법의 개정과 TP 통합 규정으로 점점 복잡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외부전문기관과 사전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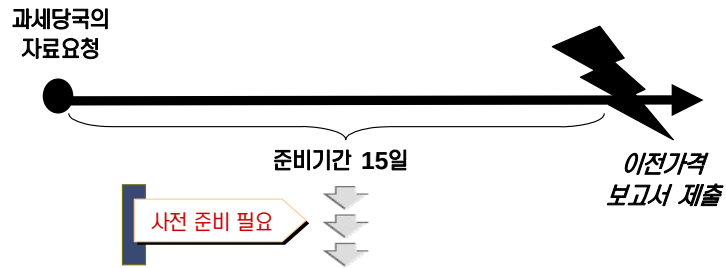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세율변경 영향 ▪ 고신기술인증제도 사전 검토 ▪ Tax Filing ▪ 이전가격보고서 준비
3	수행과제

이전가격 통합 규정으로 인한 영향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의무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중국어로 작성된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사전 준비 여부	향후 대응방안
과거년도에 이전가격 문서화를 기 수행한 경우	Update 업무 수행
과거년도에 이전가격 문서화를 미 수행한 경우	TP Study 업무 수행

목차

1	중국 세무 환경의 변화
2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3	수행과제
	▪ 일반세무측면 ▪ 이전가격측면

향후 수행과제 – 일반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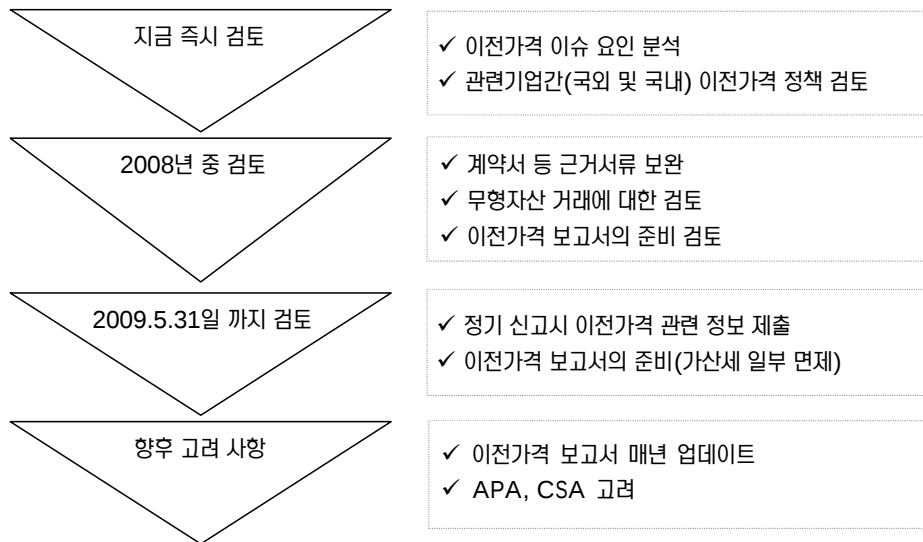
고신기술 인증

- ✓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보충규정을 상시 Monitor 하고 그 영향을 분석함
- ✓ 고신기술기업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를 해야 함
다만, 고신기술기업 자격 요건과 이전가격 보고서상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 수준을 함께 적절히 고려해야 함

조기 세무위험 파악

- ✓ 기말 세무조정시 세무조정 Checklist를 활용하여 세무조정사항의 완전성 확보 및 세무risk를 조기에 파악함
- ✓ 아울러, 세무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monitoring을 수행함
- ✓ 이러한 tax compliance process를 통하여 회사의 세무issue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함

향후 수행과제 - 이전가격 문서화



감사합니다!

Beijing

Tel: (86) (10) 6533-7097
전 훈 hoon.chon@cn.pwc.com
Tel: (86) (10) 6533-5059
임효영 hy.im@cn.pwc.com
Tel: (86) (10) 6533-3054
신윤섭 yoon-sup.x.shin@cn.pwc.com

Shanghai

Tel: (86) (21) 6123-2625
나상원 상무 (Partner)
sang.won.la@cn.pwc.com
Tel: (86) (21) 6123-3583
권세호 이사 (Director)
seho.kwon@cn.pwc.com
Tel: (86) (21) 6123-3962
전용욱 yw.jun@cn.pwc.com
Tel: (86) (21) 6123-2635
김현중 hyun-jung.kim@cn.pwc.com
Tel: (86) (21) 6123-2409
조성욱 s.cho@cn.pwc.com
Tel: (86) (21) 6123-2512
손준원 jun.son@cn.pwc.com

Guangzhou

Tel: (86) (20) 3819-2692
장철역 ch.jang@cn.pwc.com

Hongkong

Tel: (852) 2289-1305
최준혁 joon.hyuk.choi@hk.pwc.com
Tel: (852) 2289-1306
김영대 john.yd.kim@hk.pwc.com

© 2007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the China and Hong Kong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network of member firms of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connectedthinking is a trademark of PricewaterhouseCoopers LLP (US).

PwC

중국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이 평 복

kotra 중국팀장

新노동계약법과 인력관리대책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설명회 목차

I. 노동계약법과 고용환경의 변화

II. 중국의 노동환경

III.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IV. 인력관리 포인트

I. 노동계약법과 고용환경의 변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관계



I. 노동계약법과 고용환경의 변화

중국 노동정책의 대변화

1995년
노동법

“시장경제” 전환 → 新노동제도 도입

- 노동계약의 체결의무화
 - 铁饭碗 [철밥통], 大锅饭 [한술밥] 타파
- 제반 노동자 보호규정의 설정
 -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 조치의 미비

개혁목표에 공감대
형성

→ 사회적 논쟁을
아기하지 않음



2008년
노동계약법

고속경제발전 → 새로운 조정단계로 진입

-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이행강제를 위한 징벌성 규정 도입
- 고용관계의 장기화 및 안정화
 - 장기, 종신계약의 촉진

중국입법 사상 최대의
논쟁 및 의견충돌 야기

→ 지속성장을 위한 선택 ?
→ 중국경제의 경쟁력상실 ?

I. 노동계약법과 고용환경의 변화

중국 경제성장 전략의 조정 → 노동계약법에 반영

“성장 전략”

투자·수출주도형 성장 → “지속발전 가능모델”

- 수출 및 산업구조의 조정 → “중국제조”에서 “중국창조”로 전환
- 외자도입정책의 전환 → 내외자 세제통일, 외자 선별도입
- 외자의존 탈피 → 국내산업의 육성 강화
- 내수 확대 → 기업의 발전공간 확대
- 서비스업 발전 → 고용 창출
- 격차해소 및 조화사회 건설 → “先富論”에서 “均富論”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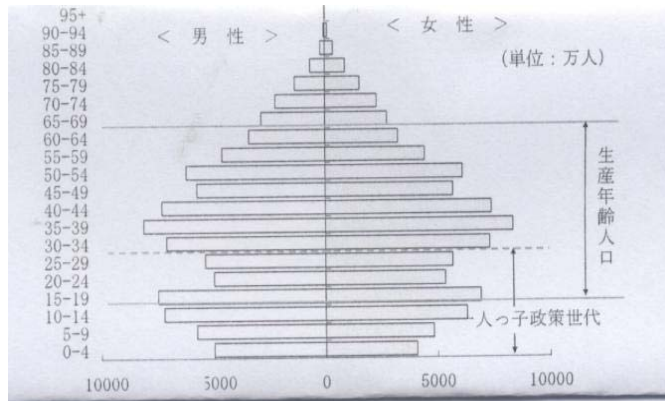
“노동 정책”

“노동의 효율” 중시 → 고용 안정, 권익보호

- 고용관계의 안정 → 사회적 안정 도모
- 위법 경영의 근절 → 노동자의 권익 보호
- 인력의 과잉 유동 억제 → 노동력의 고부가가치화
- 노동자의 임금 및 복리수준 상승 → 구매력 상승

I. 노동계약법과 고용환경의 변화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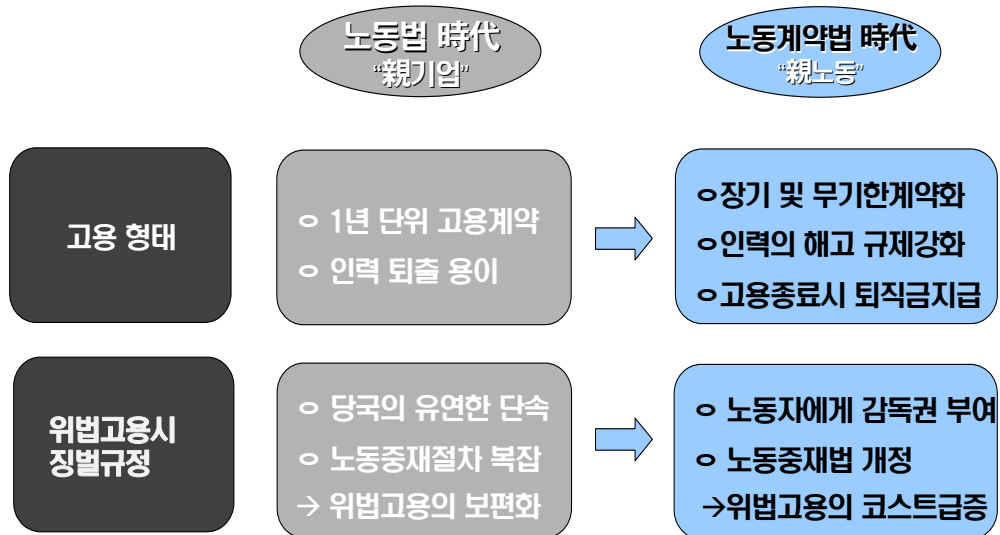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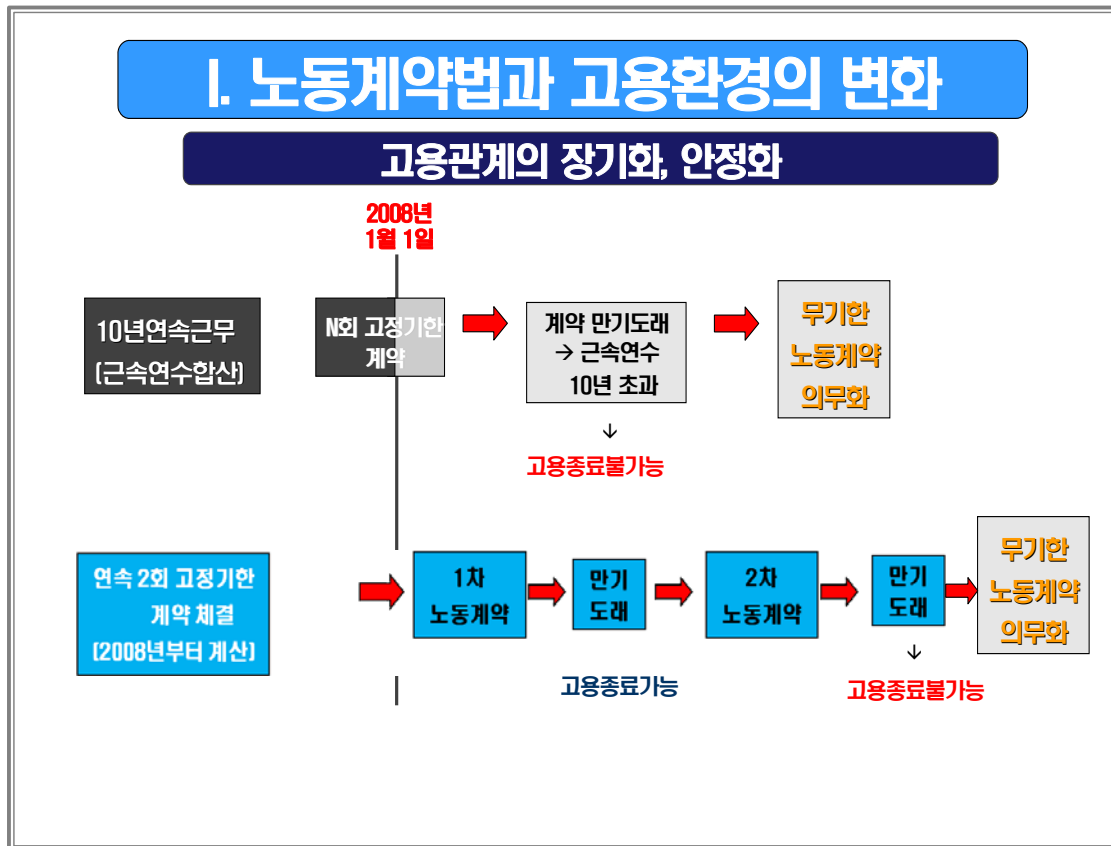
[자료원: NII 연구소 위클리 에코노미스트 레터, 2006.11.22]

- 2015년 → 인구보너스 소멸
- 低레벨 노동밀집형산업 → 유지 불가

I. 노동계약법과 고용환경의 변화

고용환경 변화 “親기업 → 親노동”





I. 노동계약법과 고용환경의 변화

위법 고용의 근절

新징벌규칙의 시행

노동계약법 시대

노동자에게 법률 무기 제공

→ 위법행위 고발시,
직접적인 이익 취득

사용자의 위법 고용행위

- 서면 계약 미체결
- 위법 해고
- 법정 시험채용기간 초과
- 무기한 노동계약 미체결

1개월초과시부터 → 2배임금

경제보상금 X 2배

사용기간 초과 → 임금2배

미체결시부터 → 임금2배

노동자

新노동중재법의 시행

종 전

노동중재의 실효성 저조

- 1년 이상의 장기소요
- 신청시효기간 2달에 불과
- 중재료 부과

2008년 5월1일 부터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유리

- 중재시한 대폭 단축
- 시효 기간 1년으로 연장
- 중재료 면제

II. 중국의 노동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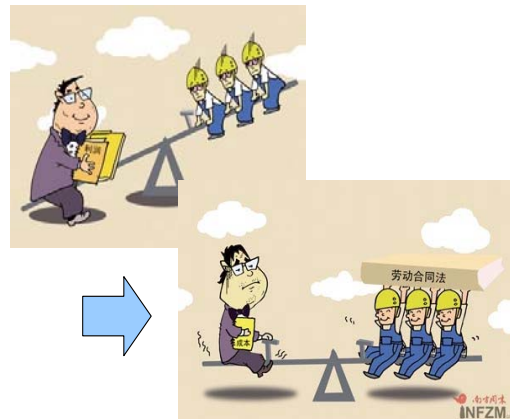
중국 노동법규의 특성

기존 노동법규

- 국가가 당사자간 私의 자치에 관여
 - 노동시간,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 민사계약, 사적 자치 보장
- 노동계약의 체결주체제한(노동법미적용)
 - 16세이하 → 노동행위능력 미구비
 - 퇴직자 → 노동권리능력상실
-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
 - 노동계약의 체결, 변경시는 상호 평등관계
 - 계약 체결시 <평등관계> → 체결후 <상하종속관계>
 - 계약의 변경시 <평등관계>
 - 사용자는 노동규칙제도를 통해 노동자 관리
- 노동법규 및 집행기준의 불통일
 - 지방별 잔업비 기준, 출산휴가기간 등 상이
 - 노동중재-법원간 판결기준 불통일

노동계약법의 입법 방향

- 노동자 경사立法의 강화
 - 勞使간 힘의 불균형을 법률로 조정
 - 사용자 → 노동법상 약자의 위치로 반전**



II. 중국의 노동환경

최근의 노동환경 동향

최근 노동자의 동향

■ 노동자의 권리주장 의식 고조

- 노동계약법의 학습효과
- 경제성장의 과실 분배요구
- 정보통신의 발달, 고학력화

■ 임금, 보상금, 사회보험 관련 쟁의 급증

- 미수령 잔업비, 경제보상금의 청구사례 빈발
- 秋后算账- 이직시 일괄 소급청구 풍조

■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악의적 행위 증가

- 계약체결 회피, 업무태만, 강제해고 요청 등

[참고] 노동분쟁 급증세

- 08년 4분기: 전년 동기비 50%-100% 급증
- 08년 5월 이후 → 폭발적 증가 예상



기업의 고용 리스크 급증

■ 3대 분쟁다발 부문

- 과거 미수령 잔업비의 청구
- 경제보상금 (특히, 합동미체결시)
- 사회보험의 소급납부

■ 관리체제의 헛점→

분쟁유발

- 잔업비 지급, 노동계약체결, 사회보험 납부의 관리체제 미흡

■ 개별 쟁의→ 전체 확산

- 개별쟁의의 패소시 → 동일 체제로 관리하던 전체 직원으로 확산 리스크

Ⅲ.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우리 기업 인사노무관리의 문제점

준법경영으로의 전환 애로

- 노동계약 미체결, 사회보험, 잔업비 위법운용 등 현상 보편화
- 준법경영 전환시 20~30%의 인건비 부담 불가피 및 소급문제 발생

인사노무 관리체제의 낙후

- 경직적인 임금시스템, 업적평가시스템 미비
- 취업규칙 제정 등 관리체제의 미흡 - 人治 관리

노동분쟁에 대한 대응력 부족

- 노동법규의 파악 부족 - 조선족 관리직원에게 과다의존
-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 대응에 급급

Ⅲ.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대응

■ 기업의 내부관리 강화

- 내부 경영관리의 규범화 → 취업규칙의 효율적 운용
- 인력관리의 전면적 개편 → 입사, 재직, 퇴직관리의 체계화

■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 “기업 이윤-임금”의 연동강화 → 노동의 적극성 저하방지
- 업적평가 강화 및 임금,보직연계 → 调岗调薪의 적극활용

■ 준법 경영 체제 확립 필요

- 잔업비, 사회보험의 합법적 운용

■ 비핵심부분의 외주, 아웃소싱 강화

- 비핵심 부분의 외주, 아웃소싱, 강화
- 단순노무업무의 외부 도급제 확대

规避(회피) or 规范(규범화)

→ 不改变就被淘汰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

IV. 인력관리 포인트

사실노동관계의 리스크 관리

先체결-後입사원칙 준수

- 신규입사자: 노동계약체결후 고용시작
- 만기도래자: 만기 1개월전 갱신여부 통지 및 만기전 갱신

고의 체결회피시 신속한 대처

- 기한부 서면계약체결 요청서 송달
- 계속 회피시, 사내 공시, 등기 송부 등 방식 동원

부서별 임시인력 무단고용불허

- 사전 인사부 승인절차 준수
- 비전일제, 일정임무완성계약 등 고용방식 다양화

파견노동자 사용시 주의

- 무자격 노무공사 또는 노무공사의 서면계약 소홀시 연대배상 책임 부담 가능
- 노무공사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활동 필요

IV. 인력관리 포인트

무고정노동계약의 리스크 관리

무고정계약요건자 출현 경고체제

- 업무소홀에 따라, 무고정계약의 불가피한 체결
- 인력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 근속기한, 계약 차수 확인

무고정계약 허용 포스트 확정

- 무고정계약의 가치가 있는 핵심포스트 결정
- 무고정계약이 불허되는 단순직종의 확정

무고정포스트의 체결대상 직원심사

- 무고정 계약 허용 포스트 종사직원의 체결여부 심사
- 인품, 능력에 따라 허용여부 결정

사전 희망 계약형태 파악 및 갱신여부 결정

- 만기전 갱신여부 및 무고정, 고정계약 희망형태 서면문의
- 고정계약 희망자과 우선 갱신계약

노무파견, 도급계약 활용

- 단순직종의 경우, 노무파견 활용 검토
- 보안, 청소, 주방 등 비핵심 분야의 도급 확대

IV. 인력관리 포인트

채용단계 관리

응모자의 상황조사

- 신분 및 학력조사, 신체검사로 부적격자 필터링
- 입사 서약서 서명 요구

채용조건의 제정 및 고지

- 채용조건 및 정규직전환 고과 요건 사전 고지
- 사용기간 만료전 고과 실시

고지의무 이행 및 지정권 행사

- 서면형태로 고지의무 이행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증빙서 사본에 서명 요구

질병 보유자의 입사 방지

- 지정병원의 신체검사 실시
- 면접 2회 실시를 통해 질병보유자 입사 방지

前직장과의 노동관계 종료 확인

- 전직장과의 노동계약 해제증명서 제출 요구
- 사회보험 등록상황 등을 통해 확인

IV. 인력관리 포인트

노동계약의 설계

보직 임용제 실시

- 보직/임금의 변경 (变岗变薪)에 유리
- “노동계약-보직” 분리운영(岗聘分离)

임금체계의 구조화

- 기본급, 직위급, 업적평가급 등 임금항목을 구조화
- 업무성과, 노동계약 이행상황에 따라 조정 (能上能下)

업무내용 / 근무지점

- 유연한 업무조정을 위해 대분류 업무 기재
- 미래 사업 확대를 감안, 배치가능지역 모두 기재

시용기간 설정

- 채용조건 및 정규직 전환고과 명시
- 법정 시용기간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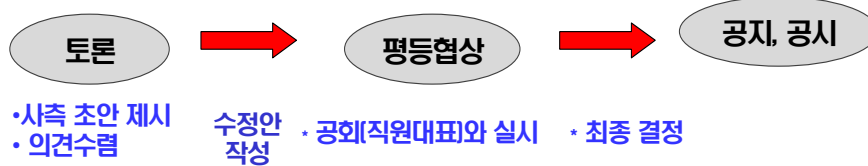
IV. 인력관리 포인트

내부관리제도 (취업규칙)의 운용

취업규칙의 중요성

- **규범적인 노동관리의 근거로 활용**
 - 근태, 잔업, 휴가, 업무/임금조정, 평가 등 규범 설정
 -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지침서”로 사용
- **회사의 노동규율 확립**
 - 규율위반 및 상응하는 책임 명시
 - 중대위반, 중대손실의 정의, 업무불감당의 기준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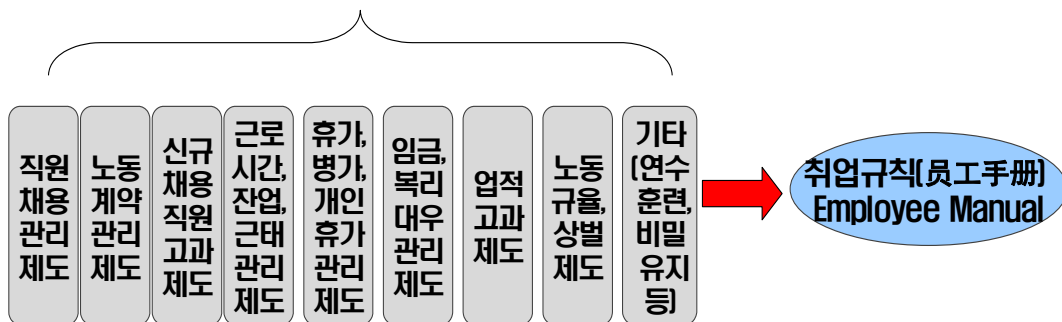
취업규칙의 법정 제정절차



IV. 인력관리 포인트

취업규칙의 개념

규칙제도 = “기업의 내부 법률”



IV. 인력관리 포인트

퇴사 관리

위법노동행위로 인한 사직

- 준법 경영체제로 전환
- 사직요인 사전 파악을 협의 해결

합의 해제

- 합의 해제의 법적 성격 파악
- 노동자의 주동적 사직제기 증거 확보

노동자 무과실성 사퇴

- 무과실성 사퇴의 종류 및 절차
- 시행시 주의사항

징계 해고

- 징계해고의 선결 요건
- 노동쟁의 발생성 회피 대책

IV. 인력관리 포인트

계약만기종료시 경제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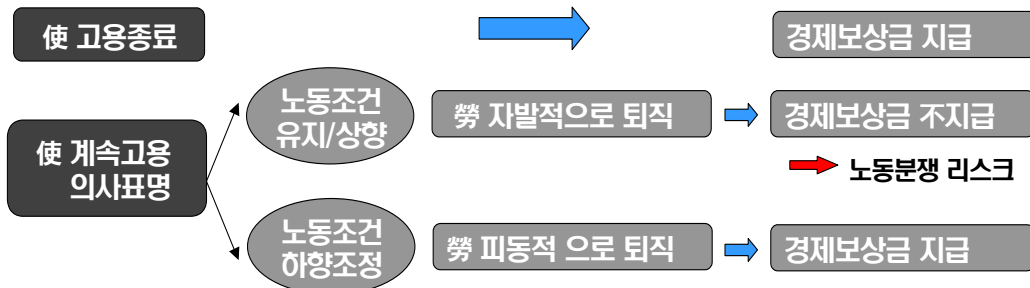
기준 / 시행시점

직전 12개월의 월 평균 실취득임금 / 2008년 1월 1일

임금수준별 차등

보통임금자 [市평균임금X 3이하]	高임금자 [市평균임금X 3이상]
? 평균 월임금 × 근속연수 ? 상한선: 없음	? 市평균임금X 3 X 근속연수 ? 최대 상한: 12개월분

지급 조건



IV. 인력관리 포인트

위법노동행위로 인한 사직시 경제보상금

노동법

- (1) 임금의 연체, 부당공제
- (2) 잔업비 위법 지급
- (3) 불법 강제 노동



노동계약법

- (1) 사회보험의 미납 또는 위법 납부
- (2) 취업규칙상 위법적 내용

보상금 지급리스크 급증

[이전] 노동부 규정, 사법해석 등에 규정 → [변경] 노동계약법에 명시

발생 가능 상황

- 계약 만기전 퇴직시 사측의 하자를 찾아내 경제보상금 요구
 - 특히, 사측이 징계해고 추진시 및 회사 경영난 발생시도 가능

IV. 인력관리 포인트

기타 주요 포인트

- **잔업비**
 - 잔업비의 계산 기수
- **근로시간, 휴가**
 - 노동시간제 종류 및 휴가 임금
-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기수 및 공상보험 유의사항
- **여직원의 3개(임신, 출산, 휴가) 관리**
 - 출산휴가시 급여 및 노동관리 유의사항
- **보직 및 임금조정 (调岗调薪)**
 - 인사관리체제의 확립

중국 사업환경 변화, 이렇게 대응하라

발행인 | 홍 기 화

편집인 | 민 경 선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서초우체국 사서함 101호

전 화 |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 낙장,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